

대전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2가단11515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욱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2. 9. 27.

판 결 선 고 2022. 11. 15.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9,157,596원 및 그 중 18,918,752원에 대하여 2021. 8. 25.부터 2022. 5. 9.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21. 5. 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6. 1. 접수 제160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20. 10. 23. 'C'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 A와 신용보증원금 19,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20. 10. 23.부터 2025. 10. 2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근거로 중소기업은행 논산지점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와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 A을 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연 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대위변제 등

1) 피고 A은 2021. 4. 24. 이자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21. 8. 25.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9,630,85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가 2021. 8. 25. 피고 A으로부터 대위변제금 중 일부로 회수한 712,100원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156원($= 712,100\text{원} \times 8\% \times 1/365$)이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 후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으로 238,688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 A의 처분행위 및 재산상태

1) 피고들은 모자지간으로 2017. 12. 30. 피고 A이 피고 B으로부터 D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부동산 매매대금 중 110,000,000원을 변제기 2020. 12. 31.(변제기 이후의 이자 연 1.2%)로 정하여 차용하고, D이 피고 A의 피고 B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2) 피고 A은 2021. 5. 31.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0,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에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6. 1. 접수 제1601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최소 시가 134,290,000원 ~ 최대 시가 188,006,000원)을 소유하고 있었고,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합계 282,120,374원¹⁾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상회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논산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E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등 합계 19,157,596원(= 대위변제금 18,918,752원 + 확정손해금 156원 + 구상금채권 보전비용 238,688원) 및 그 중 18,918,75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1. 8.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A에게 송달된 날이 기록상 명백한 2022. 5. 9.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고 그에 따른 대출 및 신용보증이 이루어져 있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그 이전인 2021. 4. 24. 이미 피고 A이 이자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켜 가까운 장래에 위에서 본 법률관계에 기초한 구상금채권이 발생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로부터 3개월 남짓 지난 2021. 8. 25.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 A을 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은 물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21다20293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방법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A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6. 1. 접수 제1601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환

[별지]

목 록

1. 충청남도 논산시 F 전 1,325㎡
2. 충청남도 논산시 G 잡종지 606㎡
3. 충청남도 논산시 G 주건축물 H동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I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조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수리점 91㎡
4. 충청남도 논산시 J 도로 52㎡
5. 충청남도 논산시 K 주유소용지 175㎡
6. 충청남도 논산시 K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2.78㎡

-끝-

1)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19,157,596원 + E조합의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실제 피담보채무

88,892,795원 +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구상금채무 60,320,473원 +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3,759,510원 + 피고 B에 대한

차용금채무 110,000,000원